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(20 년도)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신 청 인	성 명 (법인명 또는 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)		
	주 소 (본 점 소 재 지)	(☎ :)			
부과고지 내 용	①총 납 부 세 액	종 합 부 동 산 세		②납 부 기 한	
		농 어 촌 특 별 세			
분납신청 내 용	③분 납 세 액	종 합 부 동 산 세		④분 납 기 한 (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)	
		농 어 촌 특 별 세			
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97㎜×210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작 성 방 법

1. ①총납부세액: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.

2. ②납부기한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서,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.

3. ③분납세액: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
※ 분납할 세액 계산

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	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	예 시
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	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	ⅰ)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- 종합부동산세 200만원(농특세 40만원) 분납
500만원 초과하는 경우	납부할 종부세액의 1/2 이하 금액	ⅱ)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,000만원인 경우 - 종합부동산세 500만원(농특세 100만원) 분납

-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됨

4. ④분납기한: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)